

---

- 2016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삼척시**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60,000원

【제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인지 미소화 내역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원)	인지 미소화액
	총 3건			60,000
2015.08.11	□□□ 의용소방대 사무실 내부 수선공사	◆◆설비	10,757,000	20,000
2016.03.08	□□□ 배수로 설치공사	♠♠건설(주)	당초 7,576,000 변경 10,446,000	20,000
2016.03.09	▷▷▷1반 배수로 정비공사	♣♣건설(주)	당초 9,229,000 변경 10,650,000	20,000

##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인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의용소방대 사무실 내부 수선공사 등 총3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변경)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 이므로 계약체결 시 각2만 원 총 60,000원 인지를 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지를 소화하시기 바라며, 미징구한 60,00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1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32,000원

【제목】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환경관리비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계약명	도급사	계약금액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총2건			232,095	
2014.08.29	▣▣▣▣ 응급구호 등산로 정비공사(2공구)	▣▣(주)	18,519,000	94,095	0
2014.12.15	♠♠♠리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주)	15,630,000	0	138,000

##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응급구호 등산로 정비공사(2공구)”등 2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를 비교 정산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환경관리비 232,095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정산하시고, 미정산한 232,095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0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고
계	11건	5건	6건	
2014	4	1	3	
2015	7	4	3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10건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00,000원을 미소화하고, 2,460,000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00,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65,000원

【제목】 주민세(법인 균등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원)

연도별	법인명	자본금	계	주민세	지방 교육세
	계		165,000	150,000	15,000
2014	●●건설(주)	1,203,000,000	55,000	50,000	5,000
2014	▮▮ 영농조합법인	1,400,000	55,000	50,000	5,000
2015	▮▮ 영농조합법인	1,400,000	55,000	50,000	5,000

## 2. 내 용

주민세(법인 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법인 균등분)(2개소) 3건 165,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세 누락된 주민세(법인 균등분) 3건 165,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세 조치하시고, 과세 부과시 관련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98,000원

【제목】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계 2건				-362		
☒☒석축 및 배수로 설치공사	'16.04.26.	'16.05.02. ~'16.06.15.	7,966	-560	(주)☞☞건설	
☒☒경관 인도교 정비공사	'16.04.29.	'16.05.02. ~'16.06.15.	7,248	198	(주)☞☞건설	

##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6.04.26.일 (주)♀♀건설과 계약체결 시공 중인 ▣▣ 석축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석축기초에 대한 단가 산출시 수량 적용 착오에 의하여 560천원의 공사비를 과소 계상 하였으며,

2016년 04월 29일 (주)♀♀건설과 계약 체결 시공 중인 ▣▣ 경관 인도교 정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교량 상판 인도교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단가에 양생품 및 양생재료와 기구손료에 대한 품이 적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닐재를 활용한 슬래브 양생(A=133m<sup>2</sup>)을 중복 반영하였으며, 공사현장이 주차장 광장 인근으로 철근 가공 조립시 현장 가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별도의 리어카를 활용한 철근소운반(L=300m)을 추가 반영하여 198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 경관 인도교 정비공사의 과다 계상된 198천원에 대하는 설계변경 등을 통한 감액처리하시고, ▣▣ 석축 및 배수로 정비공사의 석축 기초 수량 착오에 의하여 과소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560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설계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설계 사례가 없도록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1,469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가. 카드결제 계좌 현황

(단위 : 원)

통장잔액 (2016.5.11.)	결제대금 미청구액	추징 대상 금액		
		합계	이자발생액	유류카드환급금
786,869	775,400	11,469	489	10,980

나. 카드결제 통장 발생이자 현황

(단위 : 원)

건 명	발 생 일	금 액	세입조치 여부
2015년 하반기 통장이자	2015.12.27	489	미조치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를 한 후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착오입금 등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반납조치를 하는 등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3에 따르면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감사일 현재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 “가”와 같이 잔액 786,869원 중 2015.12.27까지 발생한 예금이자 489원을 추징처리 하지 않았으며, 그 외 유류카드환급금 10,980원이 확인되었는데도 정리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 결제통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2015년 12월 이후 발생된 예금이자 489원 및 유류카드환급금 10,980원은 세입조치 하여 주시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1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80,840원

【제목】 강사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감사일 현재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 등 미징수 내역

지급일자	과목명	강사명	지급액(원)	미징수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7건		4,110,000	164,400	16,440
2015.10.07	노래교실	111	320,000	12,800	1,280
	컴퓨터 교실	222	770,000	30,800	3,080
2015.11.06	노래교실	111	320,000	12,800	1,280
	컴퓨터 교실	222	880,000	35,200	3,520
2015.12.10	컴퓨터교실	222	1,100,000	44,000	4,400
2016.04.06	노래교실	111	400,000	16,000	1,600
	노래교실		320,000	12,800	1,280

## 2. 내 용

「소득세법」 제21조 및 84조에 의하면 강사료에 대한 과세근거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최저한은 5만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함으로써 최소 25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에 의하여 기타소득(강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0. 0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평생학습대학 및 은빛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일정금액(최소 25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총7건 4,110,000원에 대한 세액 180,840원(소득세 164,400원, 지방소득세 16,44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20%인 세액 180,840원을 추징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1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건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고
계	10건	3건	7건	
2014	5	2	3	
2015	4	1	3	
2016	1	-	1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 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농로 확포장공사’ 외 9건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15,000원을 미소화하고, 130,000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15,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197,000원

【제 목】 주민세(법인균등분, 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원)

구분	연도별	건수	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비고
계		7	1,197,000	1,182,000	15,000	
법인균등분	소계	3	165,000	150,000	15,000	
	2014	2	110,000	100,000	10,000	
	2015	1	55,000	50,000	5,000	
재산분	소계	4	1,032,000	1,032,000		
	2014	2	516,000	516,000		
	2015	2	516,000	516,000		

## 2. 내 용

주민세(법인 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4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4건 1,032,000원과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법인 균등분)(2개소) 3건 165,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세 누락된 주민세(법인 균등분, 재산분) 7건 1,197,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세 조치하시고, 과세 부과시 관련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5,000원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수수료 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 : 원)

민원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미징수 수수료	비고
	신청일	발급일	농지 소재지	지번	지적 (㎡)		
5명		5건				5,000	
111	'14.08.29	'14.08.29	○○○○	211번지외1	4,228	1,000	
222	'14.09.05	'14.09.05	○○○○	9번지외1	3,036	1,000	
333	'14.10.16	'14.10.16	□□□	122-10	724	1,000	
444	'14.11.05	'14.11.05	□□□	108-2	661	1,000	
555	'15.08.19	'15.08.19	□□□	118-2	327	1,000	

## 2. 내 용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 농지법 제56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서는 상기 5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처리 하면서 농지법 제56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수수료를 미징수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조속한 시일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미징수된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 업무연찬에 유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79,000원

【제목】 건설공사 실시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 진입로 중단선형 개선공사	'16.04.01.	'16.04.06. ~'16.05.20.	17,487	279	(주)▲▲	

##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공종별 적용기준을 준수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6.04.01일 (주)▲▲와 계약체결 시공중인 『 □  
□□ 진입로 종단선형 개선공사 』를 추진함에 있어 선형개량 부분에 대한  
토공작업 공종 결정시 현지 작업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하  
여야 하나, 본 공사의 경우 현지 작업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흙깎기(기계)  
를 적용함이 적정한데 구조물 터파기(기계+인력) 품을 적용하여 279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 하는 등 공사 설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 진입로 종단선형 개선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과다 계상된  
279,000원을 감액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60,000원

【제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계	3건			60,000
2015.02.05	○○○ 마을앰프 구입 및 설치	☒☒☒☒	14,950,000	20,000
2015.05.27	□□□ 마을앰프구입 및 설치	●●●●	13,339,900	20,000
2016.02.26	⊕⊕⊕ 마을앰프 설치 및 수리	●●●●	17,541,700	20,000

##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인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마을앰프 구입 및 설치' 등 총 3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변경)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이므로 계약체결 시 각 20,000원, 총 60,000원의 인지를 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지를 소화하시기 바라며, 미징구한 60,00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0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고
계	11건	3건	8건	
2014	7	3	4	
2015	3	-	3	
2016	1	-	1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농로포장공사’ 외 10건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00,000원을 미소화하고, 170,000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 개발채권 100,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2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인감증명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인감증명의 발급 교부 현황

연도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건수	접수인 날인 건 수	발급번호 표시건수	비고
계	28건	-	-	
2014	9	-	-	
2015	13	-	-	
2016	6	-	-	

○ 인감증명의 위임발급 현황

연도	인감증명 위임발급 건수	무인 날인 건수	무인 미날인 건수	비고
계	28건	14건	14건	
2014	9	9	-	
2015	13	5	8	
2016	6	-	6	

## 2. 내 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별지 제15호 서식] 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통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사항에 대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 발급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제출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 등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 위임장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함에 있어 위임장에 접수인 날인 후 발급번호 표시의 조치 없이 위임장을 보관 및 인감증명 대리발급자 무인 미날인 등 인감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 등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위임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 위임장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보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반드시 무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10,000원

【제 목】 주민세(법인 균등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주민세(법인균등) 과세내역

(단위:원)

연도별	납세자명	사업장 소재지	자본금	계	주민세	지방 교육세
	계			110,000	100,000	10,000
2014	■■■■영농 조합법인	▽ ▽ ▽	100,800,000	55,000	50,000	5,000
2014	■■■건설 (주)	▲ ▲ ▲	1,200,000,000	55,000	50,000	5,000

## 2. 내 용

주민세(법인 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법인 균등분)(2개소) 2건 110,0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세 누락된 주민세(법인 균등분) 2건 110,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세 조치하시고, 과세 부과시 관련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000원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수수료 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 : 원)

민원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미징수 수수료	비고
	성명	신청일	발급일	농지 소재지	지번 지적 (㎡)		
111	2015.2.23	2015.2.23	○○○	223 -1	1,983	1,000	
222	2016.4.12	2016.4.14	○○○	128	1,267	1,000	

## 2. 내 용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 농지법 제56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에서는 상기 2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처리 하면서 농지법 제56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수수료를 미징수한 사실임

### **【처 분 요 구】**

- 조속한 시일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미징수된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 업무 연찬에 유의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건축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건축설계 부적정 내역

신고일	대지위치	건축주	건축규모	용도	설계자	비고
2014.07.16	○○○	555	지상 1층 45.92㎡	단독주택	건축주	

### 2. 내 용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555의 단독주택 용도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면서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설계자격이 되지 않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이 건축설계를 하였고,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없이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설계자) 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된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후 사용승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건축신고 접수 시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 및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이행되었는지 확인 후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등 관련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신분상 조치 1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목】 건축신고업무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신고일	대지위치	건축주	건축규모	용도	용도지역	비고
2015.12.08	○○○	999	지상 1층 56.0㎡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기계수리점)	보전관리 지역	

### 2. 내 용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이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확인한 후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종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15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시설 중 종교집회장 용도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555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농기계수리점) 용도 건축물의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면서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신고 처리하는 등 건축신고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 분 요 구】**

-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로 용도변경 등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건축신고 접수 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신분상 조치 1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55,000원

【제목】 건설공사 실시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 농로포장 및 소교량 설치공사	'16.05.20.	'16.05.23. ~'16.07.06.	16,482	설계변경	(주)ⓐⓑ	
□□ 농로포장 및 석축설치공사	'16.05.20.	'16.05.23. ~'16.06.21.	11,490	55	(주)◆◆	

###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 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시공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종별 적용기준을 준수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2016.05.20.일 (주)○○○과 계약체결 시공 중인 『 ▼▼ 농로포장 및 소교량 설치공사 』 를 추진함에 있어 실시설계용역시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 제1공구, 제2공구의 실시설계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의 적용에 있어 서로 상의하게 작성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2016.05.20.일 (주)◆◆와 계약체결 시공 중인 『 □□ 농로 및 석축 설치공사 』 를 추진함에 있어 단가산출 작성 시 토공 장비조합이 백호 0.4m<sup>3</sup>를 활용토록 설계하였으므로 중기운반에도 백호 0.4m<sup>3</sup>를 운반에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백호 0.6m<sup>3</sup>를 적용하는 등 적용 오류로 인하여 55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 농로포장 및 소교량 설치공사의 경우 실시설계내역 재검토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 농로 및 석축 설치공사의 과다 계상된 55천원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한 감액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설계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